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4년 4월 11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 가. 제안이유

-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지원신청률이 저조하여 자금의 실효성이 낮고, 구에서 지원대상자로 은행으로 추천된 후에도 개인신용, 담보문제로 실제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 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
- 종전 기금, 상환금 및 기타소득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되, 종전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는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96. 7. 8 제정된 조례로서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개인신용, 담보문제로 대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금활용의 실효성이 낮아 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한 바 있어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본 조례를 폐지하여 특별회계(예산액 27억 1,900만원)를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해 온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용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 시 민간용자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용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7 호
----------	---------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지원신청률이 저조하여 자금의 실효성이 낮고, 구에서 지원대상자로 은행으로 추천된 후에도 개인신용, 담보문제로 실제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금 활용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 운영 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
- 나. 종전 기금, 상환금 및 기타소득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되 종전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는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3.6.~2014.3.26,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 온 기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